인쇄물

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1:49

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 심사결과통보서

우편번호 : (137 - 701)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전화 : 02-2258-8199 전송 : 02-2258-8210

| 문서번호 | KIRB-00418_5-003 | | 시행일 | 2013-07-09 |
|----------|---|----|--|------------|
| 연구제목 | Evaluation of preoperative prognostic factors regarding prediction in tumor recurrence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| | | |
| 과제번호 | KC13RISI0404 | | | |
| 시험책임자 | 소속 | 외과 | 이름 | 김동구 |
| 지원기관 | 서울성모병원 | | | |
| 심의대상 | 계획서 | | | |
| 연구대상 | 의무기록이용연구 | | | |
| 심의일 | 2013-07-09 | | | |
| 심의결과 | 승인 | | | |
| 연구승인유효기간 | 2014-12-09 | | 연구의 지속을 위해 연구승인기간 만료 전에 지속심사의 승인을 득하십시오. 임상연구종료시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 | |
| 심의내역 | | | | |
| 심의 의견 | - 기본사항: 1. 신속심사대상 연구임 1) 최소한의 위험 이내의 연구임: 가. 허가용 의약품(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아님 나. 신속심사 체크리스트(CR-07) Category 5. 이미 수집된 재료를 이용한 연구 2)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위험이나 개인 기밀 누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, 적절한 보호 가 이루어 집. 2. 동의면제 가능: 동의면제 체크리스트 참조 / 피험자의 개인정보는 코딩하여 기밀이 보존이 됨 ▶ 〈심사결과〉승인: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연구윤리정책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적합함. 1) 지속심사주기/승인유효기간: 6개월/ 2014-01-08 2) 지속심사주기/승인유효기간: 6개월/ 2014-01-08 2) 지속심사 신청서는 승인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. 만약 연구가 종료되었을 경우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 만약 연구가 종료되었을 경우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▶ 투표 결과: 심사결과에 대한 찬성 2명, 반대 0명(반대사유:), 기권 0명(기권사유:), 이해상충으로 논의 및 투표에서 제외된 위원 0명(사유:) ▶ 안내사항 1) 심사 결과 통보서: 연구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연구의 문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2) 종료보고: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3) 연구 기간 연상 시 변경계획서를 통하여 연구기간을 변경하여 수시기 바랍니다. 4) 피험자 동의서: 최종 승인을 득한 피험자 동의서에 승인 유효기간이 명시된 IRB의 확인 도장을 받아 동의취득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5) 연구 진행 시 피험자에게 중대한 이상반응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연구윤리정책(ver. 3.1)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및 이상반응 관련 규정 (CHRPP 115)에 따라 임상연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6) 연구 왼료 후 임상연구 관련 문서는 관련 법률 및 기관규정에 따라 이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, 상세 절차는 문서보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 | | |

서울성모병원 임상연구심사위원회(KCMC IRB) /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

- * 귀하가 신청하신 심의안건에 대하여 본임상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* 시험 책임자는 IRB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IRB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사유를 기록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 연속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* 본 임상연구심의위원회는 KGCP 및 ICH-GCP 규정을 준수하며,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전 니다.

가톨릭대학교

서울성모병원

임상연구심사위원회 역적인

가톨릭대학교

서울성모병원장

(직인생략)

연구자의 임상시험/연구 수행시 지켜야 할 사항

- 1.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십시오.
- 2. 연구진행에 있어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행하십시오. 피험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사항에 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 해야합니다.
- 3. 임상연구에 사용하는 피험자 동의서는 반드시 IRB 승인을 득한 이후, IRB 행정담당의 확인 도장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4.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피험자들에게는 승인된 동의서를 피험자의 모국어로 인증된 번역본을 사용할 것이며, 이러한 동의서 번역본은 반드시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5.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과정을 수행할 것이며, 잠 재적인 피험자에게 연구에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6. 피험자 모집광고는 사용 전에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한후 사용해야 합니다.
- 7. 위원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등록된 어떠한 피험자라도 사망, 입원, 심각한 부작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- 8.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의 진행과 관련된 보고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9. 임상시험 또는 피험자의 안전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즉각 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.
- 10. 초기심의에서 승인된 연구의 지속을 위해서는 연구승인유효기간 이내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.
- 11. 임상시험이 종료(조기종료를 포함한다)된 경우, 연구종료 요약자료와 함께 임상시험 종료 사실을 서식 FI-10-02 임상연구종료보고서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